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1. 3. 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09호로 2021년 2월 1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및 관련지침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 1) 이사의 정수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개정(안 제7조)
- 2) 공단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개정(안 제11조)
- 3) 직원의 임면 규정 정비(안 제16조)
- 4)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기한 규정 정비(안 제 28조)
- 5) 결산 첨부서류 명확화(안 제29조)
- 6) 업무상황 공표 횟수 규정 정비(안 제38조)
- 7) 경영평가 규정 정비(안 제39조)

나. 관련지침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 1) 비상임감사 자격기준 개정(안 제10조)
- 2) 이사회 의장 선임방법 개정(안 제13조)
- 3) 임원추천위원회 개의 정족수 개정(안 제2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공기업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2021. 1. 14.~2. 3./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과 그동안 정비되지 못했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24개의 조항을 개정하였음.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제1항에서 공단의 이사의 정수를 7인 이내로 하던 것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정비하였음.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1항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에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10조**는 비상임감사 자격 기준에 대한 규정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에서 사장과 감사를 임명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를 따르도록 되어있고,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비상임감사는 외부전문가로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감사부서의 장은 제외)이 겸임하도록 한 것을 반영한 사항임.
- **안 제11조**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으로 2020년 6월 개정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중 제60조제1항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안 제16조**는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으로 직원의 채용절차와 방법 등을 사전에 규정하고, 직원 채용 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도록 하며, 직원 채용 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임.
- **안 제21조**는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개의정족수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로 변경됨.
- **안 제28조**는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에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함.

- 안 제29조는 결산에 관한 규정으로 법 제66조제2항에 구비서류에 지정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함.
- 안 제38조에서 업무상황을 연 1회 이상 공표하던 것을 2회로 변경한 것은 법 제46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두 번 이상 공표하도록 한 것에 따른 것임.
- 안 제39조는 경영평가에 대한 사항으로 법 제78조에 경영평가의 주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이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바이를 따르도록 하고, 기존 조례 제2항은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반복하여 규정한 것으로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고, 추후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도 조례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할 경우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함.
- 그 밖의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리를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임. 이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합리적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3. 제78조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1. 제78조의2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삭제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3조(직원의 임면) 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② 공사의 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임용되어야 한다.

③ 공사의 사장은 직원의 채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하고, 직원의 채용 시에는 공고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사의 사장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의 가족 또는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의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5조의2(업무 상황의 공표 등) 공사의 업무 상황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본다.

제46조(업무 상황의 공표 등) ① 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두 번 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8조(경영평가) ①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직영기업의 경영평가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경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78조의4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③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법 제35조제3항 및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종료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공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는 회계감사종료후 4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